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21. 01. 03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 소속 구성원이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란 법령 및 본교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여 소속 기관의 행·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내부고발'이란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고발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
 - 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라. 폭행 또는 폭언, 집단 따돌림,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마.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3조(내부고발 방법 및 처리)

- ① 내부고발을 하려는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기획처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등 인적사항
 2. 신고취지 및 사유
 3. 내부고발 대상자 및 내용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구술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구술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적은 후 내부고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을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기획처 감사담당자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 ⑤ 기획처 감사담당자는 내부고발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1.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 3.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내부고발자와 고발대상자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 본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5. 기타 기획처 감사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MSU권익위원회) ① 내부고발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 위하여 MSU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 학사지원처장, 입학학생처장, 산학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④ 간사는 기획처 감사담당자로 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내부고발 처리) ① 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의 경위 및 취지 등 내부고발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 내용의 특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내부고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그 사실을 내부고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위원회는 회의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등의 이유로 정신·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위원장은 내부고발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을 따른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1월 03일 부터 시행한다.